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
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개정안

1. 개정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근거 없는 ‘보고 또는 감사의 면제’ 내용을 삭제 : 제11조 제2항 수정

- 협약으로서 보고·감사의 면제는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없앴.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
관리법」 등에 의한 보고·감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환경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3396-5622, FAX: 3396-8763, 메일: junh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